

韓·美 電子通商懸案 '88回顧 및 '89展望

本會 國際部

1. 概 括

'88年은 韓·美 電子部門 交易에서 꾸준한 성장을 보인 해였다. 전년도와는 달리, '88年은 폭발적인 通商問題로 손상을 입지는 않았다. 정부간 通商 協商은 계속되었으며 양국간의 異見은 비교적 안정된 틀내에서 조정되어 왔다. 美國政府는 韓國에 대하여 301條 조사를 스스로 발동하지 않았다. 私企業이 제소한 301條 中에 쇠고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GTTT에서 해결하려 하거나 포도주에 관한 협상은 계속 추구하였으며 브리스틀 바이어社와 스퀴브社의 知的所有權 관련 제소와 美 映画協會의 韓國國內 映画 배급과 관련한 제소 등은 철저히 된 바가 있다.

부분적으로는 '88年이 비교적 조용했다고 말하는 것은 雙務通商懸案에서 상당히 완화된 자세를 유지하려는 사려깊은 美國 政府의 결정에 기인한다.

韓國의 盧泰愚 대통령 취임과 美國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정부가 한국에 대하여 저압력의 通商戰略을 추구토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市場開放 協商에서 주요 타결점을 찾지 못했으며 많은 事案들이 미 해결 상태로 '89年으로 이관되었다. 1989年은 韓美 通商側面에서 양국 정부에 보다 활발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부시 行政府가 對外 通商 전반에 관한 전

략을 정립하는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EC 統合의 영향, 美·캐나다 自由貿易 협정의 시행, 그리고 현재 경제상태에 있는 GATT 협상 같은 事案들은 즉각적인 관심을 요하고 있다. 또한 '88 綜合貿易法의 시행과 관련하여 곧 실시되어야 하는 조사와 협상 목적으로 행정부가 어느 국가를 「優先」 協商對象國으로 규명하는가를 고려하게 되면 韓國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88年에 조용하게 진행되어 왔던 많은 雙務 市場開放 문제들은 쇠고기, 농산물, 광고, 知的所有權 보호같은 懸案에 韓國政府로부터 美國의 새 행정부가 새로운 진전을 기대함으로써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원화 切上問題는 韓·美 經濟 懸案中 가장 어려운 하나가 될 것이다.

끝으로, 反덤핑法과 337條의 개정은 美國企業들이 불공정 수입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인 구제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韓國產 電子製品에 일련의 제소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1988年은 12月28日 韓國, 日本, 台灣으로부터 수입되는 소형전화기 시스템과 部品에 대한 제소로 막을 내렸는데 이는 1989年에 아마도 하나의 前兆가 될 것이다.

2. '88 主要懸案 回顧

가. 韓·美 電子分野 括目할만한 成長
1988年 韓國의 對美 電子製品 輸出은 1987年에

비해 매우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美 商務省에 따르면, 1988年 9월까지의 部品輸出은 '87年 金額에 비해 65%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마찬가지로, 自動資料處理裝置의 輸出은 '87년에 비해 62%, 라디오는 10%, 通信機器에서는 8%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단지 TV는 '87년에 비해 40%의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 그러나 美國의 이러한 輸入增加는 달러에 대한 원貨 평가 切上이 美國 政府가 기대했던 만큼 제동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美國의 電子部門 輸出 역시 증가하였는데 '88年 9個月間 部品の 對韓 輸出은 '87년에 비해 30%의 성장을 보여 美國의 韓國 輸出中에서 2位 자리를 차지케 하였다.

電子部門 交易은 전반적 韓, 美 무역관계에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電子通商 問題는 1988년에 韓·美 兩國間의 雙務 貿易關係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電子部門에서 韓國의 대부분의 輸入許可規制는 철폐되었으나, 美國 政府는 컴퓨터와 특정형태의 電氣製品에 대한 關稅引下 압력을 계속하여 행사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韓國의 通信部門 시장개방에 관한 美國의 관심과 知的所有權 保護에 관한 개선, 특히 尖端産業의 特許 침해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著作權 침해, 비디오 카세트와 같은 家電製品 分野에 대한 美國의 지속적인 압력 등이다.

지난해말, 美國政府는 通信과 知的所有權 문제에 대하여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1989년에 韓·美 通商懸案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 綜合貿易法案 마침내 立法化 되다.

수년간의 立法 노력과 議會와 行政府間의 치열한 협상끝에 레이건 대통령은 '88. 8. 23日 이 法案에 서명하였다. 워싱턴과 美國 및 外國業界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이 法案의 주요조항들이 워싱턴의 '88 通商問題를 지배하였다.

議會는 첫번째로 '88年 4月末 이 法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매우 논란 많은 工場閉鎖條項이 들어있다(회사는 해고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사전 통고해야 함).

예견된대로, 레이건은 이 法案을 거부하였으나, 上院 民主黨 지도부는 工場閉鎖條項과 綜合貿易法案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本法案을 별도로 추진하였다. 議會는 별개로 各法案을 통과시켰으며, 대통령은 兩法案에 모두 서명하였다.

綜合貿易法은 반세기의 美國 通商關聯 立法措置中 가장 의미깊은 法이다. 이 法은 美國 貿易法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며 通商提訴와 향후 主要 交易國과의 貿易協商의 의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게과트 조항을 포함하여 가장 논란많고 보호주의적인 조항들은 삭제되었다. 대신에, 최종 '88 貿易法에는 保護主義 색채가 덜한 Super 301條가 포함되어 있다.

Super 301條는 「貿易自由化 優先順位」에 대하여 行政府가 조치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의도로 고려되었는데 과도한 對美 貿易黑字를 내는 특정 國家를 직접 목표로 하지는 않고 있다. 반덤핑과 상계 관세법 조항의 개정도 최초로 제기된 것보다는 매우 완화된 것이었다. 最終案은 이 法의 기본 조항의 변경없이 헛점 보완만을 반영하였다.

총체적으로, 1988 貿易法은 고전적 의미의 보호주의적 法案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무역장벽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절차면에서 美國企業들이 경쟁 輸入品에 대하여 보다 용이하게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法은 韓·美 通商懸案의 雙務協商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美國의 입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 韓國에 대한 GSP 수혜 '89. 1. 1부로 終結

라. 새로운 세번 分類制度인 H. S System '89. 1. 1. 부터 効力 發生

마. 提訴品目 進行狀況

(1) 337條 調査

(가) Texas Instrument (TI) DRAM 提訴

1986年 2月 TI社의 삼성반도체와 8個의 日本 電子會社에 대한 337條 提訴 결과로, ITC는 삼성이(日本業체는 해당 無) TI社의 特許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한바 있다. ITC는 대통령에게 삼성이 제

조한 DRAM과 삼성이 제조한 DRAM을 포함하는 모든 완제품에 관한 美國市場으로부터의 배제명령을 권고하였음.

이 排除命令 권고는 삼성의 로얄티 지불 댓가로 DRAM 특허를 TI社가 허용하는 합의에 兩社가 도달하였기 때문에 發表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합의에도 불구하고 TI社는 ITC판정의 일부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TI社의 特許를 삼성이 위반하지 않았다는 ITC의 판정 때문이다. ITC는 特許 자체가 유효하지 않으며, 유효하더라도 삼성이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美國 抗訴 審判所(Court of Appeal)는 本特許에 관한 ITC 결정을 역전시켜 ITC에 반송하였다. ITC는 調査進行을 위해 '88. 9. 28 行政 審判官(Administrative Law Judge : ALJ)에 조사 명령을 발동하였다. ALJ의 예비판정은 '89. 3. 28 완료 예정이다.

누가 이기든 우리가 보기로는 이 반송 事案의 결과가 합의서를 무효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TI社에 대한 삼성의 로얄티 지불 金額에 영향을 줄 것이다.

(나) 셀룰러 電話機

모토로라社의 셀룰러 電話機에 대한 특허권 침해 혐의로 '87. 7월 모토로라社가 行한 337條 提訴는 '88. 3월 양측 合意後 종결되었다. 양측은 모토로라社가 제공기로 합의한 비독점 로얄티 보유 라이선스 외에는 本특허 침해 제품의 美國輸入을 금지하는데 합의하였다.

라이선스 공여에 관한 제반사항들이 공표되지는 않았으나, 本合意書는 로얄티 지급 조건으로 셀룰러 모빌 電話機의 美國輸入을 계속 허용할 것이다.

(다) 인텔社의 EPROM 提訴

- '87. 8. 5 인텔社는 輸入 EPROM이 自社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337條 제소.
- 主要 關聯社는 韓國의 現代電子 등 7個社.
- 1988. 11. 16 예비판정.
- ITC는 7個의 特許 중 2個만이 침해받은 것으로 판정.

(이 2個의 特許는 EPROM의 핵심 부품과는 관련없음.) '89. 1. 3 ITC는 特許 침해한 것으로 예비판정.

최종판정은 '89. 3. 16일.

(2) 反덤핑 調査

(가) Color TV

- 商務省은 몇개월의 연기끝에 '88. 6. 30 3次 年例 최종판정 ('85. 4. 1~'86. 3. 31)
- 덤핑마진율은 2.34~23.30%임.
- 대우전자에 적용된 23.3%의 高率 마진은 마진을 계산시 컴퓨터의 부정확한 모델 비교에 연유된 것이 확실하다. 大字로부터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商務省은 잘못을 인정하기를 꺼리고 있음.
- '86. 4. 1~'87. 3. 31과 '87. 4. 1~'88. 3. 31 기간을 커버하는 4, 5次 年例 審査는 아직 Pending中에 있으나, 4次 예비판정은 '89年 2月中 發表될 것으로 보임. 商務省이 5次 關聯 기간까지 검증하기로 결정한다면 4, 5次가 동시에 發表될 수도 있음.

(나) CPT

- '87. 11. 18 商務省 韓國產 CPT에 1.91%의 덤핑마진을 최종판정 (예비판정율 : 11.77%)
- '88. 1. 7부터 1.91%의 反덤핑 關稅 부과되고 있음.

(다) 電話交換機

'88. 12. 28 AT&T社, 韓國, 台灣, 日本產 Telephone 시스템과 소형 PBX에 대하여 反덤핑 제소. 이번 제소는 현재까지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온 AT&T의 태도로 보면 급작스러운 변화로 보임. 韓國 主要 대상업체는 금성통신, 삼성반도체, 동양정밀이며 AT&T는 대우, 현대전자도 關聯 Item을 生産하고 있다고 주장.

- AT&T가 算出한 社別 마진 폭은
금성사 : 40~283%
삼성전자 : 21~38%
동양정밀 : 6~27%

AT&T는 下記 3國이 이 製品의 美國市場 점유율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韓國으로의 輸入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 (韓國產 '85年 3.7%에서 '88年 16.4%로 增加, 日本產 '85年 36%에서 '88年 中半 38%, 台灣產 1~2%의 市場占有率).

商務省 1月17日까지 AT&T 제소의 청원 여부 결정해야 함. 협의있는 것으로 (그럴 가능성 높음)

결정될 때 ITC의 豫備 被害判定은 '89. 2. 13 까지임.

通常的 反덤핑 조사 과정을 거친다면 商務省의 예비판정 시한은 '89年 6月 6日임.

3. 1989年 韓·美 電子通商 展望

다음의 여러 事案들이 1989年의 韓·美 電子部門 通商關係를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가. 綜合貿易法 施行

부시의 새 行政府는 1989年 上半期 몇개월 동안에 美國의 전반적인 通商懸案을 평가하고 雙務 및 多者間 貿易 優先事項들을 총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綜合貿易法은 어느 정도 적어도 특정 「최우선」 사항과 主要 貿易 상대국에 대하여 이미 雙務 通商 의제를 완료하였다. 韓·美 通商關係에 영향을 줄 綜合貿易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電氣通信

○綜合貿易法은 美國企業이 外國 電氣通信市場 진출시의 애로사항을 극복키 위하여 특정한 協商權限과 규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綜合貿易法下에서 USTR은 1989年 1月 23日 까지 「優先對象國家」를 선정하고 1989年 2月 22日 까지 美議會에 보고하여야 하며 美 行政府는 優先 대상국의 通信市場 개방에 관하여 즉각적인 협상을 요청해야 한다. 「優先對象國」을 선정함에 있어서 USTR은 外國에서 美國業체들에게 「互惠의 市場機會」를 무시하는 정책 혹은 慣行을 철폐하는데 현저한 진전이 있는지와 美國에 대한 市場開放으로 外國기업이 인식하는 經濟的 益점, 外國의 電氣通信市場의 잠재적 규모, 해당국가에 대한 美國의 輸出 增加 가능성 등이다.

○일단 「優先對象國」으로 선정되면 대통령은 國家 차원에서의 특정 協商 목적을 밝힐 雙務 혹은 多者間 貿易協定の 시행을 목표로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우선 대통령은 協商을 성공적으로 종료시키는데 18個月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대통령이 協商이 추진중에 있다고 결

정하면 이 協商 終了時限은 1年씩 2회 연장될 수 있다. 期間 종료시 協商이 만족스럽게 시행되지 않았다면, 大統領은 특정 목적달성에 가장 타당하다고 고려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大統領의 이러한 조치들은 일반적으로 電氣通信 通商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聯邦政府의 外國產 電氣通信製品 구매 금지
- 聯邦政府의 製品購買에 대해 美國의 특정 형태의 장비 供給業체들에게 특혜 관세 인상
- 外國製品 구매에 대한 聯邦政府의 자금 및 신용 공여 거부
- 電氣通信 製品에 부과된 關稅 혹은 輸入規制와 관련하여 상대국과 체결한 協定 철회 혹은 중지
- 高率의 關稅 혹은 輸入쿼터 부과를 통한 外國으로부터의 輸入에 대한 단순한 보복조치 등을 포함한 1974年 通商法 301條에 명시된 조치

○1988年 후반 美 상공회의소에 의해 구성된 電氣通信業체들의 특별 조사반은 새 綜合貿易法下에서 목표를 두고 있는 優先 對象國 2個國中 韓國이 1個國이 되어야 하며 다른 한 나라는 프랑스가 되어야 한다고 行政府에 시사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 특별 조사반은 日本과 西獨 또한 즉시 우선 대상국으로서 선정하는가에는 의견이 갈리었다.

(2) 수퍼 301條

○綜合貿易法은 USTR이 「優先 慣行」에 관한 보고서를 1989年 5月 30日까지 議會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本報告書는 하기 사항을 포함한다.

- 철폐된다면 상당한 美國 輸出 增加가 가능한 主要 장비 및 왜곡된 貿易慣行
- 國家貿易 報告書 (National Trade Estimates)에 나타난 不公正 貿易 행위와 慣行의 數와 市場 침투 정도에 준한 外國의 協商 優先 國家 (USTR은 NTE 보고서를 4月 30日까지 제출해야 함.)
- 通商協定の 완전한 시행으로 기대되는 美國 商品과 서비스의 향상 정도

追加로 NTE 보고서는 優先 對象國의 不公正 貿易慣行이 존재하지 않으면 美國의 優先順位 國家에서의 輸出增加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 해야 한다.

○USTR은 1989年 6月 21일까지 議會에 제출된 보고서에 명시된 모든 優先國家 貿易慣行에 관한 301條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일단 조사가 개시되면, USTR은 3年 이내에 優先國家의 不公正 貿易慣行의 제거 혹은 이로 인한 보상에 관한 協商을 시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퍼 301條는 또한 本協定으로 3年 이내에 무역장벽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一般 301條 조사 일정표가 적용되며, 만족스러운 결과가 달성되지 않으면 USTR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知的所有權 條項

(가) 301條 調査의 신속화

○새 綜合貿易法 下에서 USTR은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知的所有權 보호를 거부하거나 혹은 知的所有權에 의존하고 있는 美國人들에게 공정하고도 공평한 市場開放을 부인하는 國家들을 선정하여 1989年 5月 30일까지 議會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서 USTR은 優先 對象國을 선정해야하며, 이 國家는 知的所有權 保護와 시장개방을 거부하는 부당스럽고, 심각한 행위나 관행을 행하고 있는 國家들로 그러한 행위들은 美國 商品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優先 對象國으로 선정된 國家는 신의에 바탕을 둔 協商에 임할 수 없고, 知的所有權에 관한 多者間, 雙務間 協商에서 만족스러운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USTR은 1989年 6月 30일까지 USTR의 보고서에 명시되고 다른 조사에는 속하지 않은 貿易 慣行과 관련하여 各優先 對象國에 대하여 301條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USTR의 조사는 조사 개시후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基本 301條에 따라 추진된다. 일단 USTR이 위반국에 대하여 조사 개시를 판정하면, USTR은 判定 발표후 30日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337條 修正

○綜合貿易法은 聯邦政府에 등록된 특허, 商標, 著作權 혹은 반도체의 마스크 워크를 침해한 혐의가 있는 韓國의 輸入品에 대해 337條의 이용이 가능토록 몇가지 중요한 개정조치를 하였다.

첫째, 提訴者側은 國內 産業에 미친 피해 입증은 더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전의 通商法 下에서는 제소자측이 일반적으로 被害立證을 할 수 있었으나 이에 따라 337條 조사에 자주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다. 따라서 어떤 케이스에서는 337條의 提訴를 억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둘째, 새 綜合貿易法은 제소자가 美國内에서 製品 生産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삭제하였다. 새 綜合貿易法 下에서 업체는 美國 内에서 R & D 혹은 라이선싱을 포함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 337條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우기 提訴者側은 國內産業이 효율적이고도 경제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더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다.

피해요건의 삭제와 마찬가지로, 被害 立證 要件 삭제는 337條의 조사 시행에 아마도 비용이 별로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새 綜合貿易法下에서 제소자 측은 매우 신속히 잠재적 배제 명령 형태로 잠정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네째, 단지 특정 당사자에 대하여 提訴者가 救濟 措置를 추구하는 케이스인 경우, 제소자 측은 특정 당사자가 訴訟 절차에 출두하지 않으면 증거가 명백한 사건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被訴者의 의무 불이행시 제소자 측은 신속히 배제 명령을 확보할 수 있어서 조사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337條의 修正條項들은 단기간에 가능한 두가지 결과를 낳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즉 美國의 업체들이 電子 및 다른 部門에서 外國 業체들을 대상으로한 337條 提訴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과 外國 電子業체들이 協商妥結에 임하도록 압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337條의 수정 조항은 提訴者側의 知的所有權 침해 입증에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外國의 被提訴者

들이 協商妥結로 상당한 법률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協商에 의한 타결이 外國의 피제소자에게는 더욱 선호대상이 될 것이다.

(3) Process 特許 所有者를 위한 새로운 救濟措置

綜合貿易法은 尖端産業의 가장 중요한 知的所有權 보호인 Process 特許 所有者를 위한 새로운 구제조치를 신설하였다.

同法은 Process 特許 소유자가 美國의 特許權 소유자 허락없이도 美國내의 특허절차를 이용하여 外國에서 生産된 製品의 美國내 輸入 혹은 판매를 기준으로 聯邦法院에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 새로운 條項이 立法化 되기 이전에, Process 特許 所有者가 이용할 수 있는 단한가지 구제방법은 337條 條項에 의한 것이었다. 이제 337條 구제조치(미래 효과만을 지니고 있음) 외에 Process 特許 소유자는 救濟命令 조치뿐만아니라 과거의 피해에 대하여도 財政上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조항은 process 特許침해와 관련된 輸入으로부터 포괄적인 구제가 가능토록 337條 조치뿐만아니라 聯邦法院의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4) 反덤핑法 修正

(가) 상습 違反者의 지속적 덤핑

綜合貿易法은 「상습 違反者」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反덤핑 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상습 違反者」 同種 製品 범위내에서 8年 이내에 15%의 덤핑마진으로 적어도 2회 이상의 긍정적 덤핑 판정을 받은 者로서 정의된다. 새 反덤핑 조항은 덤핑 조사시 2회긍정 덤핑 판정을 받은 違反者와 관련되어 있으면 提訴日로부터 120日 이내에 그리고 상습적인 덤핑 違反者가 포함된 경우 100日 이내에 DOC가 예비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4年内에 폐품이 되는 것으로 정의된 「短期 라이프 싸이클」 제품에만 적용된다.

이같은 정의는 특정 電子製品을 포함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

(나) 迂回덤핑 禁止條項

새 綜合貿易法은 反덤핑에 속하는 外國의 製造業 體들이 迂回輸出에 관한 反덤핑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美國에서 또는 第3國에서 조립 혹은 완제품화하거나 또는 실제적으로 최소한의 완제품 생산을 위해 第3國으로 이동하는 사례를 방지코자 고안된 몇가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條項下에서, 美國에서 조립 혹은 완성된 제품이 反덤핑 명령에 적용되는 제품과 동급 혹은 동종의 製品인 경우와 反덤핑이 적용되고 있는 國家에서 제조된 부품으로 조립되는 경우 輸入 部品은 反덤핑 명령의 대상이 된다.

製品이 第3國을 경유한 경우, 美 商務省은 第3國에서 조립된 완제품에 부품을 포함시키도록 反덤핑 적용 범위를 확장하였다.

나. 韓國의 電子製品에 대한 새로운 提訴 暗示

○貿易 구제조치를 위한 일반적인 분위기는 1989年에 새로운 提訴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AT&T社의 1988年 12月 28日 Small telephone system에 대한 反덤핑 提訴는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 綜合貿易法의 反덤핑法과 337條의 수정조항들은 美國 業體들이 부분적으로는 本 修正條項들을 시험하기 위해 또한 부분적으로 美國 業體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貿易 提訴를 유도하는 촉진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1988年 9月까지 美國의 對韓 電子製品 輸入은 급격한 증가를 기록했다.

예를 들면 1987年 동기간에 비해 금액면에서 65%이상의 電子部品 輸入이 있었다.

유사하게, 同期間동안 자동 데이터 處理機械 및 裝備는 62%의 輸入이 增加하였다.

단한가지 범주 즉 TV수상기의 경우 美國내 輸入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세계, 1988년에 계속된 美 달러화에 대한 원화절상은 韓國의 제조업체들에게 이에 상당한 가격을 조정토록 계속해서 압력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韓國의 제조업체들이 이를 시행치 않으면 기술적인 덤핑 마진이 초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綜合貿易法의 시행은 韓國을 새로운

301條 제재조치의 목표 대상국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높다.

○1989年の 主要 通商懸案 進行일정은 아래와 같다.

- (1) DRAMs 337條 調査
特許權 침해 관련 ITC의 번복 결정에 대한 예비판정 : 1989. 3. 28.
- (2) EPROMs 337條 調査
ITC 예비판정 : 1989. 1. 3.
ITC 최종판정 : 1989. 3. 16.
- (3) Telephone system 反덤핑 提訴
調査進行 여부 商務省 결정 : '89. 1. 17.
ITC 청문회 : '89. 1. 18.
ITC 피해 예비판정 : '89. 2. 13.
공정가 이하 판매에 대한 商務省 예비판정 (정상적 진행시) : '89. 6. 6.
- (4) 컬러 텔레비전 反덤핑 제소
4次 年例再審 예비판정 : '89. 2月
- (5) CPT 反덤핑 提訴
檢討 要請 機會 통보 기한 : '89. 1月
商務省 검토 : '89. 2月初 (요청 수락될시)

다. 원화 切上 壓力 계속될 展望

'88. 1. 1日 이래 韓國 원화가 13.6%의 절상이 이루어졌으나 美國의 對韓 輸入은 계속 증가되었다.

'88年 9月까지의 美國의 對韓 總 輸入은 147.7억 불로 '87年 同期間에 비해 18%의 增加를 기록했다. 美國의 兩國間 貿易赤字가 98억불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추가적인 원화 절상이나 市場開放 압력을 철회할 정도로 뚜렷한 하락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韓國政府는 本事實이 韓·美 兩國間 通商會談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 雙務 貿易協商 '89年에 빈번해질 展望

綜合貿易法의 여러 조항의 시행으로 美國은 '88年度보다 韓·美 通商問題에 대하여 더욱 공세적 입장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通信, Super 301條, 知的所有權 부문에서 韓國이 우선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기타 미결된 通商懸案은 현재 계류중인 쇠고기와 포도주에 대한 301條 조사이다.

知的所有權 문제는 '89年에 더욱 중요한 懸案으로 부각된 것이다. 綜合貿易法에서 議會는 知的所有權의 적절한 보호가 美國通商의 우선 순위가 될 것임을 명백히 했다.

특히 美國政府는 스퀴브, 브리스톨사가 301條 提訴後 철회한 特許權 보호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美映画協會(MPAA)가 '88年 후반 301條 提訴를 하였을 때 비디오 카세트의 特許 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로는 MPAA가 韓國 政府와 협상타결한 이 문제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아니나 美國 官吏들은 이 문제가 별도 協商에서 재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88年 10月의 企業소프트웨어協會(BSA)의 설립은 모조품 금지를 더욱 높은 강도로 요구할 것이라는 美國 私企業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上記 協會의 목적중의 하나가 모조품 영업의 방지에 역점을 두고 아마도 많은 國家에서의 제소를 증가시키려는데 있다. 이 그룹은 또한 의심할바 없이 부적절하게 知的所有權 보호를 시행하고 있는 國家와 더욱 적극적으로 協商에 임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